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17

발의연월일: 2022. 7. 19.

발 의 자: 안병길·강민국·김선교

김승수 · 김학용 · 박대수

박 진ㆍ이 용ㆍ이종성

이주환 • 전봉민 • 정점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 해 퇴역하는 경주마는 1,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.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,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'용도미정'에 해당했음.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는 경매의 시행에 관한 사업, 경마장 내 놀이·운동·휴양·공연·전시시설의 설치·운영, 경마장과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퇴역 경주마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<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>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 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 고자 함(안 제36조제1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호(종전의 제14호) 중 "제13호"를 "제1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6호(종전의 제15호) 중 "제14호"를 "제15호"로 한다.

14.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사업의 범위) 마사회는 제	제36조(사업의 범위)
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	
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<u>14.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</u>
	지를 위한 사업
<u>14.</u> 제1호부터 <u>제13호</u> 까지의 사	<u> 15.</u> <u>제14호</u>
업과 관련된 교육·홍보 및	
조사 • 연구에 관한 사업	
<u>15.</u> 제1호부터 <u>제14호</u> 까지의 사	<u> 16.</u> <u>제15호</u>
업에 딸린 사업	